

정부의 양계자조금사업 추진방안

의무자조금제도 조기 정착으로 양계산업 발전꾀해야…

조 병 임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자조금이란 광의로는 이익집단이 스스로 조달하는 여러 형태의 자조적 재원을 통틀어 일컫는 뜻이며, 협의로는 법적 규정 또는 집단의 결의로써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부과·수금하여 특정목적에만 사용하는 제도적인 기금이라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조금제도는 협의의 자조금에 해당된다.

축산업자조금제도는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의 자조금제도가 태동하였으며 2000년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로 이관되어 운영되었으나 무임승차 농가 등이 많아 자조금 조성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2002년에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양계자조금제도는 1992년 처음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금년까지 12년이 지났으나 양계농가의 참여 부족으로 연간 자조금 조성액이 1억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발전적인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양계자조금제도는 현행법상 산란계와 육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조금 거출액은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가격 1,000분의 5이내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양계농가에서 자조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매년 육계는 30억원, 계란은 4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거출액의 50%지원 시)을 합칠 경우 계란은 80억원, 육계는 60억원 이상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공급과잉 구조에 놓여 있어 양계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데, 양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닦고기 및 계란의 소비기반 확충이 무엇보



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계산물의 우수성 등을 TV를 통한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것이다. 양계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비 재원은 현재 여건에서는 의무자조금제도를 통한 방법이 유일하다.

국내 육계산업은 계열화사업이 발전하여 계열화업체 물량이 70~80%수준을 점유하고 있어 육계자조금은 육계계열화업체 중심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육계 계열화업체는 자기 도계장에서 도계를 하기 때문에 수납기관과 일치하여 도계장을 수납기관으로 위탁하여 거출금 납부가 용이하여 돼지 등 다른 축종보다 의무자조금 추진 여건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육계계열화업체는 한국계육협회 회원사이고, 계열화 참여 육계농가 및 일반 육계농가는 대한양계협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 협회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육계 의무자조금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되기 위해서는 육계 관련 축산단체인 농협중앙회, 대한양계협회 및 한국계육협회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자조활동자금설치 공동준비 위원회(15인 이하)를 하루 빨리 구성하여야 한다.

산란계 산물은 계란과 산란노계 형태로 유통되는데 산란노계를 대상으로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에는 산란노계를 도계하는 도계장을 수납기관으로 위탁하여 산란계 농가에서는 자조금 납부를 위하여 산란노계를 노계도계장에 출하하고 노계도계장에서 도계마리수에 상응하는 자조금을 축산단체에 납부 할 수 있으나 일부 산란노계가 도계장에 출하되지 않고 개 사육농가에서 사료화 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워 자조금 조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금년부터는 도계 실적을 삼계, 육계, 산란노계, 육용종계, 산란종계, 겸용종(토종닭)으로 구분하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산란계 도계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산란계 부화업체에서 병아리를 분양할 때에 병아리 수당 일정 금액을 사전에 자조금으로 거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모든 산란계 농가로부터 자조금을 거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부화업체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대한양계협회에서는 산란계 자조금의 효과적인 수납기관(도계장 또는 부화업체)을 농가와 협의하여 하루 빨리 결정하여야 한다.

닭 사육시설 면적이 300m²를 초과하는 양계 농가는 2006년 이전까지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효과적인 양계 의무자조금제도 실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양계자조금으로 양계산물 우수성 등 홍보로 판매확대가 예상되는 닭고기 및 계란 등 양계산물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와 닭고기 체인업체도 양계자조금 납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양계산업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양계 관련 유통 및 가공산업이 모두 참여해야 가능하다.

WTO 협정이행과 DDA협상 전개 등으로 정부에서 양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여하는 기능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소화가 불가피할 것이므로 민간 주도로 수급 및 가격안정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 하는데 그 근간이 자조금제도가 될 것이다. 양계산업의 주인은 양계농가이며 양계산업 발전여부도 양계농가 손에 달려있다. 양계생산자단체와 양계농가가 합심하여 의무자조금 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국내 양계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 현재 양계인의 사명이다. **양계**